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5-136 관련
------------	--------------

1. 수정이유

낯설고 어색한 조례 용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의하고, 입양아동과 입양 가정을 지원함에 있어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보호대상아동” 용어를 상위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을 준용하여 정의함 (안 제2조제2호)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함 (안 제3조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